

●국방부고시 제2026-14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36호)」 제11조 및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12호)」 제13조에 따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국방부장관

ICT 신기술 사업 전담기관 지정

1. ICT 신기술 사업 전담기관

- 1) 주요 업무내용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 전반
- 2) 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3) 대표자 : 홍진배
- 4)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